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8230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 관련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사항 규정(안 제9조)

법 제13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신고 제도의 신설을 고려하여 변경승인 제도를 정비하고,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을 바꾸려는 경우 등 변경신고사항을 규정함

나.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11조의2)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

다. 회계감사 대상사업 등(안 제17조)

법 제13조의9제1항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을 정하는 등 회계감사 대상사업 등에 대해 규정함

라. 실태조사(안 제17조의2)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13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

마. 정보공개(안 제17조의3)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의 명칭, 승인을 받은 업종 또는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13조의11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에 대해 규정함

바.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안 제17조의4 및 별표 2)

법 제13조의12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사. 국·공유재산 관련 계약등관련자료 및 고엽제전우회의 국·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기한(안 제18조)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고엽제전우회의 국·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기한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본문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8조의3제1항제2호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통”을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3제1항 전단”을 “법 제1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품목에 관한 사항”을 “품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사용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정에 관한 사항”을 “지정(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후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③ 법 제13조의3제2항 단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을 바꾸려는 경우
2. 수익사업과 관련된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3.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고엽제전우회의 직접 운영과 관련된 시설 또는 인력을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바꾸려는 경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수익사업의 승인조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또는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의3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수익사업이 다음”으로, “해당하는 수익사업일”을 “해당할”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직접생산”을 “직접 생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고엽제전우회의”를 “수익사업이 고엽제전우회의”로,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엽제전우회가 수행하기”를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제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물품목록번호”를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을 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를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후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신청 또는 수익사업의”를 “또는”으로, “신청받”을 “그 신청을 받”으로, “결정하여 고엽제전우회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를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예정일(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등기 신청일을 말한다)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

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연장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법 제13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실태조사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후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3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제9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했는지 여부
3. 제10조에 따른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4. 법 제13조의5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법 제13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하고,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

를 내주어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기간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제10조제1항제1호의 승인기준”을 “제10조제1항제2호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조의6”을 “법 제13조의12”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3조의4제1항”을 “법 제13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법 제13조의5제3항”을 “법 제13조의7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3조의4제6항”을 “법 제13조의6제6항”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를 “(회계감사 대상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3조의9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9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기관(이하 “공인회계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엽제전우회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실태조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3조의10제1항에 따라 고엽제전우회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용, 임금, 공장, 생산설비,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제9조의2·제10조에 따른 승인조건 또는 승인기준의 준수 여부
3.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4.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에 관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의3(정보공개)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3조의11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국가보훈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의11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의 명칭, 승인을 받은 업종 또는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및 정지 처분 내역

③ 고엽제전우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정정해야 한다.

제17조의4(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3조의12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3조의12제2항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고엽제전우회에게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계약의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공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해당 계약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③ 제2항과 관련된 고엽제전우회, 계약의 상대방 또는 해당 계약 관련 이해관계자는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의 계속 수행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13조의12제2항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해당 처분서에 관련 계약을 명시해야 한다.

⑤ 법 제13조의12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⑥ 법 제13조의12제3항에 따라 통지를 한 고엽제전우회는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를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수익사업 실적 보고)”를 “(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계약이나 허가·승인에 관한 자료(이하 “계약등관련자료”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등관련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

다.

1. 해당 계약 또는 허가·승인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 또는 허가·승인을 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용도
4.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등기·등록 등
5.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현황 및 상태
6.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법적 분쟁

③ 고엽제전우회는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영 제10조의6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처장은 제17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17조의4제1항·별표 2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의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

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회계연도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제17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더한 정지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이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승인취소(제2호가목·나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나) 위반행위에 따른 수익사업 운영질서의 훼손이 심각한 경우
- 다)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 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행위에 따른 수익사업 운영질서의 훼손이 경미한 경우
- 다)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마. 처분권자는 제2호(가목·나목·다목·마목·아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가 법 제21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의12 제1항제1호	승인취소			
나.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법 제13조의12 제1항제2호	승인취소			
다.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의12 제1항제3호	승인취소			
라.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의12 제1항제4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마. 법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의12 제1항제5호	승인취소			
바. 법 제13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13조의12 제1항제6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사. 법 제13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13조의12 제1항제7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아.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의12 제1항제8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13조의12 제1항제9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차.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법 제13조의12 제1항제10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가.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3조의2 제1항제11호	승인취소		
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법 제13조의2 제1항제12호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승인취소
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법 제13조의2 제1항제13호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승인취소
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	법 제13조의2 제1항제14호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승인취소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업종)	
	사업장 소재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장 소재지, 사업소 직원 현황 및 조직도 및 관련 설비 현황 - 사업 경영을 위한 자금 명세 및 자금 조달 방법 - 경영계획 및 수익금 사용계획 -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사업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제10조에 따른 승인가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결재	→	승인 통보
신청인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장

제 호

사업수행자 지정서

1. 지 부 명:
2. 대 표 자: ○ ○ ○ (생년월일)
3. 주 소:
4. 수익사업명:
5. 사업구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장

직인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종전 수익사업 내용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승인시기
		사업장 소재지	
	변경 수익사업 내용 등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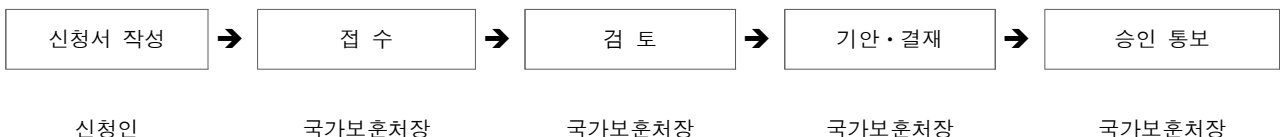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 변경계획서 1부 - 업종 및 품목 등의 변경 필요성 - 관련 조직 및 설비계획 - 자금조달 계획 및 향후 수익성 판단 등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후 수익사업의 사업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수익사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제출일	접수일
신고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변경 사항	①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장의 교체	
	② [] 수익사업과 관련된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③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직접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의 변경	
	④ []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 변경	
변경 내용	변경일(변경사항을 그 변경일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적습니다)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다만, ④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신고서 제출 신고인	➔	접수 국가보훈처장
---------------	---	---------------	---	--------------

제 호

수익사업 승인서

1. 단 체 명:
2. 대 표 자: ○ ○ ○ (생년월일)
3. 주 소:
4. 승인내용:
5. 수의계약대상단체 여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국가보훈처장

직인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수익사업의 내용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승인시기	승인번호
		사업장 소재지		
	희망하는 유효기간 연장기간 및 그 이유	희망하는 유효기간 연장기간		
		희망하는 이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2.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심사	→	기안·결재	→	유효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 통보
신청인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

1. 단 체 명:
2. 대 표 자: ○ ○ ○ (생년월일)
3. 주 소:
4.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5. 승인시기: 승인번호:
6. 사업장 소재지:
7. 유효기간 연장 기간: . . . ~ . . . (년 개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 승
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년 월 일

국가보훈처장

직인

제 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1. 생 산 품 목:
2. 생산업체명:
3.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00000-00000000)
4. 대표자 성명:
5. 소재지(본사):
(사업장):
6. 유효기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업체의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가보훈처장

직인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15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교육지원 신청) ① (생략)	제8조의2(교육지원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u>별표</u> 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 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 <u>별표 1</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3(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 ----- ----- ----- ----- ----- ----- ----- -----.

1. (생략)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통

3. ~ 7.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수급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9조(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는 법 제1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익사업의 신규 또는 추가

1. (현행과 같음)

2. -----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 7. (현행과 같음)

② -----

별표 1-----
--.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 등) ① -----

----- 법 제13조의3제1항-----

-----.

1. -----

운영과 그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신
규 또는 추가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
업의 수행자 지정에 관한 사
항

② 법 제13조의3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
사항”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
다.

<신 설>

-- 품목

2. 수익사업-----

---- 사용계획
3. -----
----- 지정(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
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가보훈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
인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
정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후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
의 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
된 수익사업의 수행자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③ 법 제13조의3제2항 단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
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신 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을 바꾸려는 경우

2. 수익사업과 관련된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3.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고엽제전우회의 직접 운영과 관련된 시설 또는 인력을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바꾸려는 경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의2(수익사업의 승인조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3조의3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간의 과잉경쟁 방지 또는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수익사업의 승인기준)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3조의3
제1항 전단에 따라 고엽제전우
회가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이 다
음 각 호의 승인기준을 모두 충
족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한다.

1.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운영하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일 것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조
 달청장이 정하는 직접생산
 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고엽제전우
 회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
 는 수익사업

나. (생략)

2. 고엽제전우회의 자금조달 능
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
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엽제전우회가 수
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
는 업종 및 품목일 것

3. (생략)

②·③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종

제10조(수익사업의 승인기준) ①
법 제13조의3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
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
 -- 수익사업이 다음 -----
해당할 -----

가. -----
 ----- 직접 생산

나. (현행과 같음)

1. 수익사업이 고엽제전우회의
 ---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
황 등을 고려할 때 고엽제전
우회가 운영하기---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또는 품목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략)
2. 품목의 중복 여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물품목록번호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고엽제전우회는 법 제1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제10조에 따른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1. (현행과 같음)
2. -----

-----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을 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
-----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

② 고엽제전우회는 법 제13조의 3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 3. (생략)

4.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생략)

<신설>

②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후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가 -----

5.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3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예정일(같은 항 제1호의 경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신청 또는 수익사업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고엽제전우회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수익사업의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익사업 운영 단체”를 “고엽제전

우에는 변경등기 신청일을 말한다)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

또는 -----
----- 그 신청을
받-----
----- 결정-----

-----.

<삭 제>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우회”로 본다.

<신 설>

제11조의2(수익사업 승인의 유효
기간 연장) ① 법 제13조의4제2
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연장
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유효기간
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승
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
서로 된 연장신청서를 포함한
다)에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법 제13
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실태조사에 걸린 기간은 제외
한다) 이내에 그 승인의 유효기
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
을 할 때에 「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를」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3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제9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했는지 여부

3. 제10조에 따른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4. 법 제13조의5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법 제13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하고,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u>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 기간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u> ⑤ <u>제4항에 따른 통지는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u>
제12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제12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u>제10조제1항제1호의 승인기준을</u>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 ----- ----- <u>제10조제1항제2호의 기준</u> ----- ----- -----.
③ 고엽제전우회는 <u>법 제13조의 6에</u>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 반납해야 한다.	③ ----- <u>법 제13조의 12</u> ----- ----- ----- ----- -----.
제14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	제14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

기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략)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13조의5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엽제전우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⑥·⑦ (생략)

제16조(재심의 요구 등) ① 고엽제전우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기 등) ① 법 제13조의6제1항-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법 제13조의7 제3항-

⑤ -----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재심의 요구 등) ① -----

----- 법 제13조

의4제6항 단서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④ (생략)

제17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법 제13조의6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란 고엽제전우회가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

의6제6항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회계감사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3조의9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② 법 제13조의9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기관(이하 “공인회계
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
항에 따라 고엽제전우회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해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의2(실태조사) ① 국가보훈
처장은 법 제13조의10제1항에
따라 고엽제전우회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태조
사를 할 수 있다.

1. 고용, 임금, 공장, 생산설비,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제9조의2·제10조에 따른 승
인조건 또는 승인기준의 준수
여부

3.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4.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신 설>

운영에 관한 확인을 위해 필요
요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의3(정보공개)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3조의11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국가보훈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의11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의 명칭, 승인을 받은 업종 또는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및 정지 처분 내역

③ 고엽제전우회는 제1항에 따

<신 설>

라 공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정정해야 한다.

제17조의4(수익사업에 관한 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3조의12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3조의12제2항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고엽제전우회에게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계약의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공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해당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예측
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지 여부

③ 제2항과 관련된 고엽제전우
회, 계약의 상대방 또는 해당 계
약 관련 이해관계자는 해당 수
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의 계속 수행 여부 등
에 관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에
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13조의
12제2항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
는 때에는 해당 처분서에 관련
계약을 명시해야 한다.

⑤ 법 제13조의12제3항에서 “총
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
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⑥ 법 제13조의12제3항에 따라
통지를 한 고엽제전우회는 해당

제18조(수익사업 실적 보고) 고엽제전우회는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수익사업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결산보고서(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포함)

2. 법 제13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실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삭 제
<신 설>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를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계약이나 허가·승인에 관한 자료(이하 “계약등관련자료”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등관련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신 설>

<신 설>

를 말한다.

1. 해당 계약 또는 허가·승인
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 또는 허가·승인
을 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
산의 사용용도

4.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
산의 등기·등록 등

5.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
산의 현황 및 상태

6.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
산에 관한 법적 분쟁

③ 고엽제전우회는 법 제20조의
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
유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영 제
10조의6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한
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
처장은 제17조의2에 따른 실태
조사, 제17조의4제1항·별표 2
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
준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유
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의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